

의안번호	제657호
의결 연월일	2017년 월 일 (제358회)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출자	충청북도지사
제출연월일	2017년 8월 21일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제657호
----------	-------

제출연월일 : 2017년 8월21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노동계 근로자 대비 이용 부대 및 편의시설과 회의실, 주차장이 부족한 상황으로 노동계가 지속적으로 증축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왔고 아직까지 사무실이 없어 입주하지 못한 노동단체(섬유,한전,금융연합)의 불만해소 등 도내 산별노조간의 상호 유대와 협력기반 강화로 노사관계의 안정적 운영과 근로자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증축 및 그에 따른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이고,
- 도 단위 장애인단체 사무실이 단체별로 개별입주 등 산재해 있어 이를 통합하고 중심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여 근무여건 개선과 도 단위 장애인단체들이 한 장소에서 집적됨에 단체간 소통과 화합으로 장애인의 복지증진, 사회참여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하고자 충청북도 장애인회관 건립을 위하여 부지 매입 및 신축하려는 것이며
- 청주시 청원구 주중동.율량동 일원의 택지개발 및 공동주택 건설로 도로관리사업소가 주거지역 내에 위치하게 되고, 대형 중장비 가동, 차량 운행에 따른 소음,분진,교통불편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어 도로관리사업소를 이전하여 민원해소 및 지방도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현재 청주시에서 무상 사용 중인 도유지(차량등록사업소 부지)와 이전대상 부지(청주시 소유)를 교환하고 부지 조성에 필요한 사유지 일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 재산의 취득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부지 매입》

- 위 치 : 청주시 서원구 장성동 115, 115-23, 115-24번지 3필지
- 사업기간 : 2017. 9. ~ 2018. 12.
- 매입규모 : 부지 1,437m²
- 사 업 비 : 435백만원 (도비 100%)
- 취득사유 :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증축에 필요한 부지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증축》

- 위 치 : 청주시 서원구 장성동 115, 115-23번지
- 사업기간 : 2017. 9. ~ 2019. 7.
- 증축규모 : 991m²(사무실4개, 대회의실, 소회의실, 편의시설 등)
- 사 업 비 : 2,753백만원 (도비 100%)
- 취득사유 : 도내 노동계 근로자대비 이용 부대 및 편의시설, 회의실, 주차장이 부족한 상황에서 노동계가 증축의 필요성 제기

《충청북도 장애인회관 건립 부지 매입》

- 위 치 : 청주시 서원구 미평동 산12
- 사업기간 : 2017. 9. ~ 2019. 12.
- 매입규모 : 부지 3,700m²
- 사 업 비 : 1,350백만원 (도비 100%)
- 취득사유 : 충청북도 장애인회관 건립에 따른 부지 매입

《충청북도 장애인회관 건립 신축》

- 위 치 : 청주시 서원구 미평동 산12
- 사업기간 : 2017. 9. ~ 2019. 12.
- 규 모 : 2,300m²(지하 1층, 지상 4층)
- 사 업 비 : 6,650백만원 (도비 100%)
- 취득사유 : 도 단위 장애인단체 사무실이 단체별로 개별입주 등 산재해 있어 이를 통합하고 중심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여 오랜 숙원사업 해결 및 근무여건 개선

《청주시유지 교환 취득》

- 위 치 :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학평리 248-1, 248-5번지 2필지
- 취득시기 : 2017. 9. ~ 2017. 12.
- 취득규모 : 임야 19,865m²
- 재산가액 : 1,480백만원(탁상감정액)
- 취득사유 : 도로관리사업소 이전대상 부지

《사유지 매입》

- 위 치 :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학평리 산23-1번지 등 5필지
- 매입시기 : 2017. 10. ~ 2018. 12.
- 취득규모 : 임야.전 5,771m²
- 재산가액 : 657백만원(탁상감정액)
- 취득사유 : 도로관리사업소 이전대상 부지 내 편입

□ 재산의 처분

《차량등록사업소 부지 교환 처분》

- 위 치 :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527-6번지 1필지
- 처분시기 : 2017. 9. ~ 2017. 12.
- 처분규모 : 부지 1,703m²
- 재산가액 : 937백만원(탁상감정액)
- 처분사유 : 청주시에서 차량등록사업소 부지로 무상 사용중인 충청북도 소유재산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이전부지(청주시유림)와 교환 하고자 함

3.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첨

4. 관계법령 : 별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제14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8조

2017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14-2)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전소유자	비고
	지목	소 재 지	면 적					
계	토지	3건	10,908.00	2,441,997				
	건물	2건	3,291.00	9,403,000				
	기타							
1	토지	청주시 서원구 장성동 115번지 등 3필지	1,437.00	435,000	2018	충청북도 근로자종합 복지관 증축에 따른 부지 매입		신규
	건물	청주시 서원구 장성동 115번지 등 2필지	991.00	2,753,000	2019	충청북도 근로자종합 복지관 증축	충청북도	증축
	기타							
2	토지	청주시 서원구 미평동 산12	3,700.00	1,350,000	2019	충청북도 장애인회관 건립에 따른 부지 매입		신규
	건물	청주시 서원구 미평동 산12	2,300.00	6,650,000	2019	충청북도 장애인회관 건립		신축
	기타							
3	토지	청주시 청원구 학평리 산23-1 등 5필지	5,771.00	656,997	2017	도로관리사업소이전 대상부지 사유지 매입		
	건물							
	기타							
4	토지							
	건물							
	기타							
5	토지							
	건물							
	기타							

관계법령발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p>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p> <p>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p> <p>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p> <p>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p> <p>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0.></p>	<p>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p> <p>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p> <p>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p> <p>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p> <p>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p> <p>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p> <p>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p>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p>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다음 연도 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p> <p>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p> <p>제14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5호 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 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 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 서식)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9호 서식)